

긴급입찰 공고 사유서

□ 개요

- 용역명: 국가시범도시 확산을 위한 몽골 울란바토르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
- 용역기간: 계약일로부터 160일
- 예정금액: 300,000,000원(부가세 포함)

□ 목적

-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「K-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」을 시행

□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**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**(기재부 계약제도과-665호, 2020.4.9.)에 따라 조속한 용역 추진 필요
- 과업성과품 제출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**공고기간 단축** 필요

□ 근거법령

-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-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
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
-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